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52986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2022. 8. 24.

판결 선고 2022. 10.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82,962,323원 및 그 중 122,937,235원에 대하여는 2021. 9. 16.부터, 58,980,096원에 대하여는 2021. 9. 30.부터 각 2021. 12. 1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9,665,588원 및 그 중 58,980,096원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2021. 12. 1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21.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7. 접수 제100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2)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1	2016. 12. 29.	63,000,000	70,000,000	D은행	58,980,096	피고 B
2	2018. 7. 26.	135,000,000	150,000,000	중소기업은행	122,937,235	

(3) 피고 B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1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21. 5. 21.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2021. 7. 6.부터 D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원고는 2021. 9. 16. 중소기업은행에 122,937,235원을, 2021. 9. 30. D은행에 58,980,09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고, 한편 채무자는 원고가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비용과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비용은 685,492원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359,500원이다.

다. 피고 B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1) 피고 B은 2021. 7. 6. 동생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7. 7. 피고 C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구상금으로 182,962,323원(= 122,937,235원+58,980,096원+685,492원+359,500원) 및 그 중 122,937,235원에 대하여는 2021. 9. 16.부터, 58,980,096원에 대하여는 2021. 9.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2.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9,665,588원(=58,980,096+685,492원) 및 그 중 58,980,096원에 대하여 2021.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2.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59,665,588원 및 그 중 58,980,0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 7. 6.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에는 그 무렵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가까운 장래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17. 9. 15.경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18. 8. 30. 추가로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이 위 대여금 합계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1. 7. 6.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금 4,200,000원과 근저당권부채무 23,113,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0,000원을 모두 피고 C이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72,687,000원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고 피고 C은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제6, 8 내지 11호증, 을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과 피고 B은 남매지간인 점, 피고 C은 피고 B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의 정함도 없으며, 한편,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고 C은 위 6,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시점 이후인 2019. 8. 22.에는 피고 B으로부터 21,200,000원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둘 사이에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정황¹⁾이 엿보여 위 6,000만원이 대여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채무상계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는 제출하면서도 2018. 8. 30.자 대물변제예약서(을제1호증)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위 대물변제예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점, 피고 B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지급불능이 발생하자마자 급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설령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여금 채권의 소멸로써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되고,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점²⁾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우관제

별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2022. 6. 9.자 답변서에 첨부된 것)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거래내역을 보면, E이 2017. 2. 10.부터 2019. 3. 25.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93,18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 B과 피고 C 부부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할 뿐이다.

2) 이 사건에서 을제1호증의 대물변제예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2017. 9. 15.자 대여금 3,000만원 부분은 여전히 여기에 해당한다.